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씻기로 SARS, MERS, 인플루엔자, 유행성 눈병 등 집단 감염성 질환을 50~70% 예방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검역, 감시활동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 환자 등은 진료 및 보호 경비, 최저생계비, 가족요양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
1. 감염병 알아보기 4
1.1. 감염병의 의의 4
1.1.1. 감염병의 개념 및 초기증상 4
2. 감염병 예방 10
2.1.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10
2.1.1. 일상생활·해외여행 시 예방방법 10
2.1.2.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13
2.2. 국가의 감염병 예방활동 23
2.2.1. 감염병 예방활동 23
2.2.2. 소독·검역·감시 29
2.2.3. 교육·홍보 35
3.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38
3.1. 감염병 신고 및 보고 38
3.1.1. 감염병 신고 38
3.1.2. 감염병 보고 41
3.2.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43
3.2.1.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43
3.2.2. 감염병 환자 등 관리 47
3.3. 감염병 관리 및 조사 51
3.3.1. 감염병 관리 51
3.3.2. 감염병 조사 54
4.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59
4.1.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59
4.1.1.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59
4.1.2. 감염병 관리시설 피해보상 받기 61

1. 감염병 알아보기

1.1. 감염병의 의의

1.1.1. 감염병의 개념 및 초기증상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개념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제5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감염병의 종류

▪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분류	개념	감염병의 종류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및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및 E형간염
제3급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梅毒) 및 엠폭스(MPOX)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기생충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및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주요 감염병의 증상

감염병 초기증상

감염병명	초기증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설사 및 객혈과 오심도 나타남
결핵	·기침(폐결핵 초기에는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을 하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가래가 섞인 기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침은 결핵 뿐 아니라 감기, 기관지염, 흡연 등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결핵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객혈(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뜻하는 말로, 폐결핵환자에서 육아종 내부의 고름이 가래와 함께 섞여 나올 때 빨간 피가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 보통 영화나 소설을 보면 환자가 기침하면서 많은 양의 피를 토하는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결핵이나 폐암이 상당히 진행한 환자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대부분 결핵환자는 가래에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결핵은 일반 감기 몸살과 달리 39도, 40도에 이르는 고열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오후가 되면서 약간 몸이 좋지 않다 싶을 정도의 미열이 발생했다가 식은 땀이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전형적인 결핵환자는 잠을 잘 때 식은 땀을 많이 흘려 베개가 젖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호흡곤란(폐는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폐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폐 여기 저기에 육아종과 공동이 생기면서 폐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폐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으로 시작 ·발열후 1~2일째에 수포성 구진이 손바닥, 손가락, 발바닥에 생김 ·구내병변은 볼의 점막, 잇몸이나 혀에 나타남 ·때로는 둔부에도 나타나지만, 수포가 아닌 발진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음 ·감기증상이 대부분이지만, 면역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가 감염될 경우, 드물게 사망하는 예도 있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후 수일 이내 고열, 두통, 근육통, 위장 통증, 피로감, 설사, 인후통, 딸꾹질, 발진, 눈의 충혈, 혈성 구토 등의 증세를 보임 ·감염 후 일주일 이내 흉통, 쇼크, 사망, 실명, 출혈 등이 일어날 수 있음 ·22~90%의 높은 치사율을 보임
인플루엔자	·잠복기는 1~4일(평균 2일)이며, 증상 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두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
장티푸스	·잠복기간은 보통 1~3주이나, 균의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상대적 서맥, 비종대, 장미진, 건성 기침 등이 주요한 증상 및 징후입니다. 발열은 서서히 상승하여 지속적인 발열이 되었다가 이장열이 되어 해열되는 특징적인 열 형태를 갖습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병의 경과는 34주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설사보다 변비가 많습니다. 백혈구, 특히 호산구의 감소가 특징적이고 경증이 흔하나 중증의 비전형적 증상도 일어납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회장의 파이어판에 궤양이 생겨서 간헐적인 하혈이나 천공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증에서는 중추신경계 증상도 생깁니다. ·지속적인 발열, 무표정한 얼굴, 경도의 난청, 이하선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과적 합병증으로는 장천공, 장폐색, 관절염, 골수염, 급성 담낭염, 농흉 등이 있다. 사망률은 10%이지만 조기에 항생제로 치료하면 1%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홍역	·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은 특징적인 홍반성 구진상 발진 · 설사,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 폐렴 등
황열	· 발열과 근육통, 오한, 두통, 식욕상실,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환자의 15% 정도는 독성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 독성기의 환자는 다시 열이 발생하며 급격히 황달, 복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또한 눈, 코, 입, 위장관 등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감염병 초기증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감염병 예방

2.1.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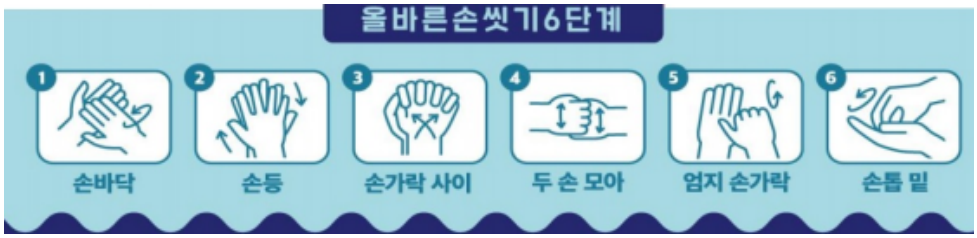
2.1.1. 일상생활·해외여행 시 예방방법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방법

손씻기 및 기침예절

▪ 올바른 손씻기·기침예절 실천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설사질환의 30% 및 호흡기질환의 20%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2면 참조).

▪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3면).



▪ 기침예절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4면 참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방법

해외여행 전 감염병 예방방법

▪ 여행자 주의사항

▹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

▹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 황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콜레라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와 추가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3.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간, 주사용 백신은 3년간 유효합니다.
4. 일본뇌염은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아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초회 접종인 경우 1주일 간격으로 2회 피하주사하며, 1년 뒤 1회 접종합니다. 추가접종은 6세, 12세에 합니다. 여행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5. 광견병 예방접종은 시골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달 이상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어깨근육에 3회 접종합니다.

6.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인과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자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5년 후에는 추가접종을 해야 합니다.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의 노인, 심장질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등이 접종대상이 되며 매년 1회씩 접종 받아야 합니다.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해야 합니다.

√ 기존 복용약물(피임약 포함),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콘돔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권고사항 확인하기

▹ 황열, 말라리아에 대해 국가별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국가별 권고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의2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제3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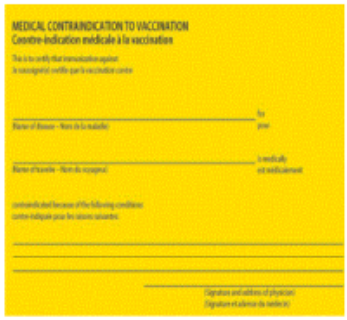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일부 국가는 황열감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입국·경유하는 여행자는 입국 10일 전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를 휴대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출입국 수속 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이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해야 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예방접종-황열).

※ 다만, 위의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검역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33호서식).

▪ 위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별지 제34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면제증명서>

▪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8조의3제1항).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해외여행 중 감염병 예방방법

▪ 음식과 물

▹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을 것.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손세정제를 사용할 것.

▹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시고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할 것.

▹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먹을 것.

▹ 완전히 파스퇴르화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제품을 먹지 말 것.

▪ 야외 활동 시 여행자 주의사항

▹ 30~50% DEET을 사용한 곤충 기피제를 사용할 것.

▹ 야외에서는 긴팔옷, 긴바지, 모자를 착용할 것.

▹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황혼에서 새벽까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에 머무를 것.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 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것
-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말라리아는 경한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음
-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할 것

> ※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질병관리청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사이트』 및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2.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란?

▪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 접종,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류됩니다.

-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질병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

대상 감염병	접종대상	접종시기
결핵 (BCG, 피내접종)	모든 영유아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	모든 영유아	생후 0, 1, 6개월에 3회 기초접종(다만,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경우에는 면역글로블린(HBIG)과 B형간염 1차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합니다.

디프테리아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파상풍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일해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폴리오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3차 접종 가능시기 6~18개월) -만 4~6세 때 1회 추가접종 ※ 폴리오 예방접종은 DTap-IPV 혼합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DTaP-IPV백신으로 기초접종 하는 경우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생후 2~59개월 소아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5세 이상 소아(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결핍 등) -2세 미만의 연령에서 침습 Hib 질환을 앓은 경우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생후 2~59개월 영아 및 소아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개월 ~ 18세 소아청소년 -다당질 백신(23가)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소아 ~ 64세 성인 ·65세 이상 노인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12~15개월에 추가접종 ※ 10가와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당질 백신(23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 -비장적출술, 인공와우 이식술,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요법 시작 시 가능하면 적어도 수술 2주전에 접종
홍역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유행성이하선염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풍진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수두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모든 영유아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 -만 6세, 만12세에 각각 1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으로 분류 되며, 두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약독화 백신)	모든 영유아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질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임신부 -50~64세 인구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	10~12월
장티푸스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종하는 사람(가족 등)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체류자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요원	5세 이상 소아에서 1회 접종. 3년마다 추가접종 (2~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역학적 배경과 장티푸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감안하여 결정)
신증후군출혈열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A형간염	-20~30대 성인 중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A형간염 환자 발생이 높은 국가(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A형간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군인, 의료인, 외식업 종사자 -혈액응고 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약물 중독자 -남성 동성애자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만 12세 여아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생후 2~6개월 영아	생후 15주가 되기 전 첫 번째 접종 완료(생후 8개월이 되기 전 모든 접종 완료)

▹ 임시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며, 결핵(BCG, 경피접종),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 입니다(출처: 예방접종 도우미).

※ 예방접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영유아에 대해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

▹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 제출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예방접종 기관 안내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 어르신 폐렴구균 지정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르신 폐렴구균 지정의료기관)
-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 보건소(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보건소)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국립검역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2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대상

-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및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목표에 따른 접종순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8호의2).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총 18종의 백신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인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처치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이상반응 신고기준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별 이상반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지급기준, 신청기한 및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구분	내용
지급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장애인이 된 사람

구분	내용
지급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한 사람의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우선순위자]에 대한 보상

구분	내용
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만원

▪ 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피해보상 절차

▪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제33호서식).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별지 제34호서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구분	첨부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시신 화장 등으로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위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항).

>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이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2.2. 국가의 감염병 예방활동

2.2.1. 감염병 예방활동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예방조치

▪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예방을 위해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021년 12월 29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48호, 2021. 12. 30. 개정·시행) 제2조].

구분	위반 횟수 산정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단서).

※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의3).

※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

-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 해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자목).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제1호)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만원 √ 2회 이상 위반: 10만원

※ 그 밖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 위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구분	내용
감염병의 종류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
감염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급절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방역관 등 예방활동

방역관

▪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단서).

▪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위원

▪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검역위원은 위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예방위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예방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그 밖의 감염병 예방

▪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50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2.2.2. 소독·검역·감시

소독

소독의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전단·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6).

※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후단).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 위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단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업무 종사자에게도 소독에 관한 교육(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

※ 위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항).

소독해야 할 시설

▪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검역

검역의 대상

▪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제1항).

▹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 및 다음의 화물(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 제외)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다음의 사유로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유

√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사유

검역 장소 및 시각

▪ 검역 장소

▹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1항).

▹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단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위 검역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조제5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검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출입국검역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

감염병 감시의 개념

▪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질병관리청, 『2026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9면 참조).

감염병 감시체계

▪ 감염병 감시체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6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9면 및 11면 참조).

구분	내용
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제1급~제3급감염병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제4급감염병
보완감시 (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인플루엔자: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 제4급감염병 중 기생충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기생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4급감염병(인플루엔자 및 기생충감염병은 제외): 다음의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 제4급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제8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 감염병 감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교육·홍보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

▪ 일선 보건소의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자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 업무 담당자(6-9급)들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 FMTP II 과정 교육을 통해 감염병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감염병 유행대비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교사 감염병 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보건 교사 감염병관리 심화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대상 감염병 관리 실무능력 유지 및 감염병 대비·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무과정

▪ 업무관계자 및 초동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무과정 교육을 통해 생물테러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위기대응 메뉴얼을 익혀 생물테러 감염병 의심사례 발생시 이를 조기에 인지 및 진단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대상 예방접종 교육

▪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보건소 인력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대상 예방접종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과정은 온라인 교육시스템(http://edu.kdca.go.kr)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은 매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체자원은행 운영 실무자 교육

▪ 질병관리청 유전체센터 생물자원은행과는 실무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체자원은행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운영실무자 기본교육과 인체자원 정도관리 연구, 법률과 윤리 등 전문적인 업무역량 함양을 위한 운영실무자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체자원은행 운영 실무자 교육

▪ 보건의료분야 전문교육으로 병원성미생물 연구분야의 직무역량강화와 감염병 진단역량 향상을 위해 병원성미생물 분류 및 보존관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체자원은행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뉴미디어 홍보

▪ 질병관리청은 최신 질병보건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반응해 블로그·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과 국민입장에서 질병관리 이슈를 소통·확산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홍보

▹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미션 수행 과정에서 관련 조사연구 결과 및 수집 정보의 투명한 공개·공유를 원칙으로 국민과 소통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와 관련 정책고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최신 감염병 뉴스와 감염병 관리, 질병 예방, 질병보건 연구, 예방접종도우미, 결핵ZERO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 질병관리청은 온라인, 모바일 매체를 활용해 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SNS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 질병예방, 보건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센터에서는 전 국민 손 씻기 운동, 수족구병 예방, A·C형 간염 예방홍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정보(온열, 한랭) 제공, 검역 관리 및 질병 유행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손씻기 중요성을 안내하는 공익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3.1. 감염병 신고 및 보고

3.1.1. 감염병 신고

감염병 신고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질병관리청장이나 감염병환자 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등

▪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및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의4 서식).

-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 분양·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 분양·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후단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후단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감염병 미신고 등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제2호).

▹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호·제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사람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호).

손해배상청구권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 2021. 03. 09.개정·시행) 부칙 제3조].

3.1.2. 감염병 보고

감염병 보고 체계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의2).

▪ 위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5서식·제2호서식).

-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그 밖의 보고

▪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2항).

▪ 재난상황의 보고자(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말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하목)가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

▪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후단).

3.2.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3.2.1.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감염병 환자 진단

"감염병 환자"란?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6조의2제1항).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권리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전단).

-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 자가(自家) 또는 시설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격리된 사람에 한정)
- 감염 여부 검사

※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후단).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제9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8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0항).

▪ 위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사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함)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감염병 환자 치료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A.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0호).

- 제1급감염병
- 결핵
- 홍역
- 콜레라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전원(轉院) 또는 이송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轉院) 또는 이송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 등"이라 함)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환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2호의2).

3.2.2. 감염병 환자 등 관리

감염병 환자 관리

환자 파악 및 관리

▪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건소장은 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 환자 격리

일반 감염병 환자

▪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

▪ 위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검역소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5조제1항, 제2조제5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를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6조제1항

본문).

-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자가(自家)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6조제1항 단서).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많이 발생하여 위에 따른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6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7조제1항).

학교 등

▪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을에 대해서는 격리 및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 유치원

-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항).
- 관할청은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 됩니다(「유아교육법」 제31조제4항).

▪ 초·중·고등학교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3항).

수용시설 등

▪ 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수용자 격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항)

소장은 위에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4항)

▪ 보호외국인 환자 격리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외국인보호규칙」 제7조제4항 및 제2조제3호).

청장 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제1항).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

출입국의 금지·정지

▪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검역법」 제24조).

- 검역감염병 환자 등
- 검역감염병 접촉자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승무금지

▪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선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안 됩니다(「선원법」 제82조제3항).

여객열차 탑승 금지

▪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호).

▪ 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승선금지

▪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감염병환자 채혈 금지

▪ 혈액원은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혈액관리법」 제7조제2항).

※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한 때에는 채혈을 할 수 있습니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 채혈금지대상자의 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위를 위반하여 채혈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혈액관리법」 제19조제3호).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감염병환자 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다음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위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6호).

장사시설 등의 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사업주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

▪ 사업주는 위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2항).

3.3. 감염병 관리 및 조사

3.3.1. 감염병 관리

감염병의 관리

감염병의 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 고시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위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며,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

▪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2항).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설치

▪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후단).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의 설치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제3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함

√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하여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제3호)

√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전단).

▪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지원의 내용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로 정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후단).

의약외품 등 수출금지 등

의약외품 등 수출 및 반출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함)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른 수출 및 반출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호).

3.3.2. 감염병 조사

역학조사

역학조사란

▪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진료기록
-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역학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구분	조사방법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 √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함. √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함. ※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면접조사	√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위생·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함. ※ 다만, 면접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명단, 장소별 인원 현황 및 담당업무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인체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합니다.

√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수영장·온천·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함),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함), 장비 등에서 채취합니다.

√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류	검체 대상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수영장, 냉·온수기의 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상수도, 지하수, 냉·온수기의 물
식품공전(食品公典)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
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도마, 칼, 행주, 식기, 수족관 물 등을 말함)
수인성(水因性) 원충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수영장

√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 환경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다만, 상수도나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합니다.

▹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감염병환자등 또는 이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이, 벼룩 등을 말함) 또는 동물(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 등을 말함)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을 합니다.

√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에 대한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病性)감정을 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합니다.

▹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가 병원·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역학조사의 시기

▪ 역학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관

▪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후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단서).

▪ 역학조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

▹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4항).

▪ 위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역학조사 계획 수립

▹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역학조사 기술지도
- 역학조사 교육훈련
-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5항·제7항 및 제47조제1호).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6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미신고 등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8호).

손해배상청구권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 2021. 03. 09.개정·시행) 부칙 제3조].

4.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4.1.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4.1.1.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기간유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감염병 환자 지원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호).

최저보장수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호 및 제47조제1호·제3호).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호).

가족요양비

▪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3호).

▪ 위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 위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2조).
>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제외)
>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2조).
>
>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
> √ 생활지원비 금액: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다만,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단서).

▪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2제4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 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6 및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지원

▪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본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의 치료비 및 경비 등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단서 참조).

4.1.2. 감염병 관리시설 피해보상 받기

감염병 관리시설 보상

관리시설 손실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 보고·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경우
-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손실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호)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호)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

-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

-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0호)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2호)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조치로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2호의2)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3호)

-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위의 손실에 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건물의 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